# 『서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(긴급재난지원금 2채』 시행 공고

서울시 및 25개 자치구가 함께 진행하는 『서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(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2차)』 지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. 7. 7.

서울특별시장

## 1 사업 개요

○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예술창작 활동 위축 및 위기를 맞은 문화예술인들의 지속적 이고 안정적인 창착활동 지원을 위한 서울 예술인생활안정자금(예술인긴급재난지 원금 2차) 지원 사업을 추진

#### 2 지원대상

- **공고일 현재(2021년 7월 7일)** 서울시 거주 중인 예술인으로서 아래 세가지 기준(①, ②, ③항)을 모두 만족하는 자
  - ① 공고일 현재('21.7.7) 기준 서울시 자치구(주민등록주소지상 해당 자치구)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되어 있는 자
  - ②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유효기간이 공고일 현재 유효한 자
  - ③ 가구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인 자

※ 보건복지부 고시 2021년 기준중위소득 기준(2021년 6월 건강보험료 고지액 기준)

가구원수	소득기준 (중위 120%)	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		
		직장가입자	지역가입자	혼합
1인	2,193,397	75,224		-
2인	3,705,695	128,342	117,560	129,761
3인	4,780,740	165,968	168,444	168,195
4인	5,851,548	203,558	216,474	206,575
 5인	6,908,848	237,681	259,446	242,008
6인	7,954,324	278,094	309,041	286,737

#### 【지원 제외 대상】

① 2021년 서울예술인긴급재난지원금(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 - 1002 호) 수혜자

#### 【지원요건 확인사항】

- 예술활동증명 확인서
  - 예술활동증명 확인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(www.kawfartist.kr)에서 심의를 통해 발급하며 공고일 현재 예술활동증명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유효하여야 함.
  - ※ 신청중인자, 심의중인자, 유효기간이 경과한자 제외
- ㅇ 가구원 산정
  - 세대별 주민등록표(주민등록등본)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존비속, 배우자 및 형제, 자매를 가구원으로 봄
  - ※ 건강보험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본인과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 더라도 본인의 배우자나 자녀는 가구원에 포함
  - ※ 신청자가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 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을 모두 가구원수에 포함

- 소득기준
  -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 여부(보건복지부고시 제2020-170호 '20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·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'에 따른 가구당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함)
- 대상자가 직접 제출한 2021년 6월분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로 확인
- 본 사업 서울예술인 생활안정자금(예술인 재난지원금 2차) 사업의 경우 1인 지역가입자 건보료 기준금액이 조정되었음

## 3 지원 내용

- o 예술인 1인당 최대 100만원
  - ※ 접수인원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최종지급금액이 낮아질 수 있음

## 4 신청 및 접수

- (온라인 신청) 7월 21일(수) 09:00 ~ 8월 3일(화) 24:00, 거주 자치구 담당자 이메일(첨부 2 확인)
- (현장 신청) 7월 21일(수) 10:00 ~ 8월 3일(화) 18:00
  - \* 업무시간(9~18시) 내 신청 가능(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)
  -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관할 자치구 상담창구를 확인하여 방 문 신청
    - ※ 접수기간 중 토, 일 및 점심시간(12:00 ~ 13:00) 접수 불가
    - ※ 접수기간을 확인하시고 해당 접수기간 이전이나 이후에 접수된 건은 인정하지 않음
  - ※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접수가 원칙이나, 원로 예술인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접수를 하셔야 하는 경우 자치구 현장 접수처로 방문

- ※ 대상자 본인이 신분증. 지급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 준비하여 직접 신청
- ※ 동 지원금은 심사 완료 후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, 가급적 10월 지급 완료 예정 - 다만,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

## 5 제출서류

- ①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등 동의서(홈페이지 다운로드)
- ② 본인 신분증 사본 및 본인명의 통장 사본
  - ※ 신분증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
- ③ 예술활동증명 확인서(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급 후 제출)
- ④ 주민등록등본(과거주소변동 사항 등 전체 포함, 발급일자14일내)
- ⑤ 가족관계증명서(발급일자14일내)
- ⑥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'21년 6월)
  - ※ 예술인본인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의 ⑥ 서류포함
  - ※ 건강보험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본인과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더라도 본인의 배우자나 자녀는 가구원에 포함

#### 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가입자의 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피부양자인 경우 ■본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■본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■본인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■ 가입자(부양자)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■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■가입자(부양자)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(추가서류)주민등록등본의 가구원중 건강보험 (추가서류)주민등록등본의 가구원중 건강보험 피부 피부양자로 등록되지 않은 자 양자로 등록되지 않은 자 ■가입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■가입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■가입자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■가입자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■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■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(추가서류)배우자 및 자녀가 주민등록등본상 (추가서류)배우자 및 자녀가 주민등록등본상 등재 등재되지 않았을 경우 배우자 및 자녀의 이래 서류 되지 않았을 경우 배우자 및 자녀의 아래 서류 ■가입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■가입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■가입자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■가입자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■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■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

## 6 대상자 결정 및 지급방법

- 대상자 결정
  - 신청서 및 증빙서류, 지원제외 대상자확인 등으로 심의후 대상자 결정
  - 발표 및 지급 : 2021. 10. 예정※ 신청한 자치구에서 통보
- 지급방법 : 본인명의 계좌 입금

## 7 중복수급 및 부정수급 관련

#### 〈1〉 중복수급

- ① 2021년 3월 31일 공고한 서울예술인긴급재난지원금 사업 수혜자
  - ※ 본 사업은 서울예술인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의 2차 추가 모집 공고로 1차 사업(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 - 1002호)의 지급자는 제외됨

#### 〈2〉부정수급

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\*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,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「공공재정환수법」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
  - \* (예) 의도적으로 일부 소득 자료를 누락하는 경우 등
-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, 「형법」제231조(사문서 등의 위조·변조) 에 따라 고발조치(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)

### 8 기타 참고 사항

-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심사는 신청인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여 진행
- 증빙자료 제출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에서 보류되거나, 심 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된 서류 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.
  - 일부 서류의 누락 등으로 인한 지급지연과 우선순위를 판단함에 있어 받는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
- 지원금 지급 이후 중복지급이 안되는 다른 지원금을 수급한 것으로 확인되 는 경우는 지원금을 환수할 예정
-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접수를 권장드리며, 방문 접수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민등록 거주지 기준 자치구 홈페이지 및 자치구 문화 체육과(문화과, 문화예술과 등 문화관련부서) 를 통해 확인 가능